

□ 지방중정법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 (중무기구) ① 교구의 중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무국, 기획국, 교무국, 재무국, 사회국, 포교국, 호법국을 두며 이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국은 인사 및 예규문서, 회의, 직인 보관,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, 말사 감독, 섭외, 문서, 포상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2. 기획국은 교구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, 교구 사업의 총체적 기획 및 홍보, 교구 재정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기획,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, 기타 기획업무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3. 교무국은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법요, 의식, 승적, 승니의 행해, 수계, 도서출납 및 보관, 기타 교무국에 속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4. 재무국은 본사 재산관리, 말사 재산 감독, 비품관리 및 영선, 각종 부과금, 기부금, 예산안, 금품출납 기타 재정 및 경리,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5. 사회국은 사회활동과 그 부대사업, 복지사업,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계사업, <u>고적, 귀중품 관리 보관, 정보, 기타 불교 및 사회문화, 인권, 환경, 여성, 통일, 노동</u>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6. 포교국은 포교에 관한 제반 사항과 신도조직의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	<p>제15조 (중무기구) ① 교구의 중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무국, 기획국, 교무국, 재무국, 사회국, 포교국, 호법국, <u>문화국</u>을 두며 이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사회국은 사회활동과 그 부대사업, 복지사업,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연계사업, <u>고적, 귀중품 관리 보관(삭제) 정보, 기타 불교 및(삭제)</u> 사회문화, 인권, 환경, 여성, 통일, 노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7. 호법국은 각급 교구 중무기관 또는 중무원의 승규에 관한 사항 기타 중무원 호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각종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에 과를 둘 수 있다.</p>	<p>8. 문화국은 본사와 말사의 성보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, 불교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, 고적, 귀중품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